

##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4. 7. 11.

발의자 : 송석복 의원외 13인

###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(1994. 7. 6. 대통령령 제14317호)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제5조(여비의 종류) 제1항 중 “국내여비는 운임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식탁료”로 구분한다중 “식탁료”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킴
- 제6조(일비 지급 기준)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“1일 30,000원”에서 “1일 50,000원”으로 인상하도록 함.
- 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 내용은 개정조례안 (별표1)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,
-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 제9조(국내.외 여비 지급 범위의 조정)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-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및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지교통비, 숙박비 등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을 평균 약 23% 인상하며, 현실을 반영하여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의 갑지, 읊지 구분을 삭제하고 국외여비의 숙박비, 식비를 평균 약 50%인상함

###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(1994. 7. 6 대통령령 14317호)

##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조(여비의 종류) 제1항 “식비” 다음의 “식탁료”를 삭제한다.

제 6조(일비 지급 기준) 중 “1일에 30,000원”을 “1일에 5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 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국내.외 여비지급 범위의 조정)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(별표 1) 및 (별표 2)의 여비지급 기준에 공무원 국내.외 여비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(별표 1) “국내여비 지급 기준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(별표 2) “국외여비 지급 기준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(별표 3) “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표”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7조 개정 규정은 1994. 7. 6부터 적용한다.

# 조 문 대 비 표

한 행	개 정 안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----- -----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식탁료로 구분한다.  ② (생략)	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----- -----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 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일비지급기준) ----- ----- 1일에 30,000원 으로 한다.	제6조(일비지급기준) ----- ----- 1일에 50,000원 으로 한다.
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시의 여비) (생략)	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시의 여비) (삭제)
제9조(신설)	제9조(국내.외 여비지급범위의 조정)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(별표 1) 및 (별표 2)의 여비지급기준에 공무원 국.내외 여비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준용규정) (생략)  (별표 1)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7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) ○ 내용 별지 참조  (별표 2) 국외여비 지급기준표(제7조 제3항 관련) ○ 내용 별지 참조  (별표 3)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표 (제8조 제1항 관련) ○ 내용 별지 참조	제10조(준용규정) (현행과 같음)  (별표 1)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7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) ○ 내용 별지 참조  (별표 2) 국외여비 지급기준표(제7조 제3항 관련) ○ 내용 별지 참조  (별표 3) (삭제)

(별표 1)

## 국내여비지급기준표 (제7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운임	운임	운임	운임	운임			
의장 · 부의장	1 등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
의 원	2 등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16,200	10,500

- 비고 : 1.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동일 특별시·직할시·시 또는 근내에  
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  
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  
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  
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(별표 2)

##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제3항 관련)

(단위: 미불화)

구 분	항 공 임	일 비	숙박비	식 비	준 비 금		
					15일 미만 30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장· 부의장	1 등 정 액	25	130	107	140	170	195
의 원	2 등 정 액	20	114	81	130	155	180

비고 :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공무원  
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달리 지급한다.

## ( 현 행 )

( 별표 1)

##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分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	식탁료 (1야당)
의장 · 부의장	1등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갑 지 5,000  을 지 4,500	갑 지 17,000  을 지 15,000	갑 지 11,000  을 지 9,500	800
의 원	2등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갑 지 4,500  을 지 4,000	갑 지 14,000  을 지 11,500	갑 지 10,500  을 지 9,000	800

- 비고 : 1. “갑지”는 서울특별시 · 직할시 ·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, “을지”는 갑지외 지역의 지역으로 한다.
2.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3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,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## ( 현 행 )

( 별표 3)

##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여 행 거 리	지 급 액
12킬로미터 이상	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
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	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
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	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
2킬로미터 미만	지급하지 아니함.

비고 : 1.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대중교통수단의 정기 운행 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.